

계룡시 행정기구설치조례승인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과장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시 본 청

제3조 (실·과의 설치) 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를 둔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시장 공약사항 관리

다. 시의회 지원 협력 및 총괄 조정

라. 주요정책의 개발·심의·조정 및 시정종합발전계획과 특별과제 연구

마.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지원, 시민의식함양운동 추진

바. 민·군·관 화합행사 추진 및 지원

사. 계룡대 지원·협의 및 계룡협조회 구성·운영

아. 군관련시설 유치지원 및 군시설에 대한 민간견학 안내지원

자. 시 예산편성관리 및 재정운영계획 수립 추진

차. 경영수익 실태분석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

카.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타. 공무원의 문책·징계 요구

- 파. 시정에 대한 주요 사항의 홍보, 시보 및 시정홍보물 발간
- 하.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 거. 시정홍보위원 및 홍보조직(DM망) 운영
- 너. 시정기록 사진촬영 및 홍보용 사진 관리
- 더. 시정홍보자료 작성제공 등 언론사간의 연계 체제 유지
- 러. 신문·잡지 등 구독 계획 수립 및 자료관리
- 머. 통계에 관한 사항
- 버. 행정정보화 및 전산정보에 관한 사항

2. 총무과장

- 가. 서무,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 나. 공무원의 인사, 고시, 교육,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다. 행정구역 및 조직관리
- 라.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마. 여론행정 및 동향수집분석
- 바.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 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아. 비상대책업무 및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관리
- 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 차. 시자금의 배정·출납관리 및 시금고 운영
- 카. 회계·계약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 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 파. 새마을, 특수지역개발,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 하. 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
- 거. 통신에 관한 사항

3. 시민봉사과장

- 가.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 나. 민원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 다. 민원서류의 수발·심사 및 창구즉결민원 처리
- 라. 호적사무
- 마.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 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 사.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아. 지적공부 정리보존 및 지적민원처리
- 자. 지가동향 관리

차.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카.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

타. 토지거래 허가·신고 등 토지거래 규제 업무

4. 복지문화과장

가.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나. 저소득주민보호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다.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구호사업

라. 보훈업무 및 국가유공자단체 지원

마. 여성단체 육성지원 및 여성권익 향상에 관한 업무

바. 여성문제상담 및 요보호여성 선도사업

사. 노인복지 및 경노사상 고양에 관한 사항

아. 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자. 가정의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관리

카.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타.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

파.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관리

하. 도서관 건립 및 문화의 집 조성에 관한 사항

5. 환경녹지과장

가. 환경보호종합계획 수립 추진

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업무

다. 대기·수질·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관리

라. 국토대청결운동

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바.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업무

사. 공중화장실 관리

아.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자. 녹지공원 조성 관리 및 보호수 관리

차. 국토공원화사업

6. 농업경제과장

가.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나. 농민단체 육성 지원

다. 식량작물 생산 및 농업재해대책(양수기 관리 포함) 추진

라. 농지전용 인·허가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

- 마. 농기계 보급 및 농촌일손돕기 추진
- 바. 정부양곡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관리
- 사. 농·수·축·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 아. 잡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에 관한 사항
- 자.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 차. 산촌종합개발 및 천연림보육사업
- 카. 종축관리 등 축산에 관한 사항
- 타.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 파. 유통진흥, 소비자보호,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 하. 광업, 에너지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거. 고용안정, 노사협력, 산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너. 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 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7. 건설과장

- 가. 건설업면허 및 건설기계 사업체 인·허가 업무
- 나. 토지수용 및 보상업무
- 다. 지하수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라.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 마. 경지정리 및 농지기반관리
- 바. 정주권개발사업
- 사. 토목공사 지도감독
- 아. 시도·농어촌도로, 교량의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점용허가
- 자.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 차. 하천 및 소하천 종합정비 및 공사 시행
- 카. 자연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타.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인가
- 파.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부과 징수
- 하.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8. 도시주택과장

- 가. 도시개발종합계획 수립 조정
- 나. 지역지구단위 계획 수립
- 다. 도시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
- 라.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
- 마. 사업단지 지정

- 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사. 시범도시개발
- 아. 택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
- 자. 공영개발특별회계관리
- 차. 건축민원 인·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 카.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
- 타. 공동주택 건설 지도 및 사후관리
- 파. 주거환경개선사업

제 3 장 직속기관

제 1 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4조 (설치)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남선면에 보건지소를 두며, 명칭·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소장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업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 (설치) ①법 제104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충남 계룡시 금암동 10번지에 둔다.

제8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 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물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농민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업개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하부행정기관

면 · 동

제10조 (설치) ①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면·동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직무) 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 지역을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 (면·동장) 면·동에는 면·동장을 두며, 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위치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계룡시보건소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남선보건지소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957-14	